



產業保健醫와 保健管理者

(Ⅱ)

최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산업보건의 분야가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들의 임무가 한층 더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아울러 직장에 있어서의 노동환경과 작업형태도 변화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산업보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산업보건의의 임무는 중차대하다.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산업보건에 관한 법규,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보건교육 등 넓은 분야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산업보건의들이 직무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본 칼럼을 만든 것이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차례 개정되었고 앞으로도 바뀌게 되는 것이 있겠지만 현실에 입각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매월 연재하여 질의(Q) 응답식(A)으로서 알기 쉽게 집필하여 본 것이다.

(조규상)

● 產業保健 管理體制 ●

Q4. 산업보건의의 선임과 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A.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가진 사업장으로서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이다. 다만 여기서 건설업의 경우와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 관리기사, 환경관리기사, 산업보건 또는 환경위생 관련학과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보건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로 되어 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수 및 선임방법은 다음 표와 같이 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다.

Q5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릅니까.

A. 산업보건의는 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보건의는 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직무의 내용으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근로자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직무는 보건관리 전반에 걸친 내용인 것이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규모	수	선임방법
1. 광업	상시 근로자	3	별표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2. 화합물·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1,000인 이상		
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4. 제 1차 금속산업	상시 근로자	2	별표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5.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별표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6. 제 1호 내지 제 5호외의 제조업	상시 근로자 2,000인 이상	3	별표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2,000인 미만	2	별표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	1	별표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7. 제 1호 내지 제 6호의 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3,000인 이상	2	별표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6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3,000인 미만	2	별표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별표6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8.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50인 미만	1	별표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시행령에 있어 ①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②보호구관리 ③유해화학물질의 관리 ④건강상담, 보건교육 ⑤응

급조치 일차의료관리 ⑥작업환경개선 ⑦사업장순회 점검지도와 조치의 건의 ⑧직업병 원인조사와 대책 등으로 되어 있고, 이를 직무는 의

사, 간호사, 위생기사의 직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나, 많은 경우 사업장에서는 각종 직능을 가진 보건관리자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있어 보건관리자는 포괄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Q.6 산업보건의의 권한과 사업주의 책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A. 사업주는 산업보건의가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

[별지 제1호 서식]

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주와 산업보건의는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현재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의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는 경우는 적으며, 따라서 월 50인 근로자 기준 한 시간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산업보건의도 드물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독일의 경우는 산업보건의협회와 경영자협회간에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보건의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다.

산업보건관리는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므로 노사가 자발적으로 사업장내에서 수행되어야 할 일이다. 현재 법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 생산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하여 생산라인에서 산업보건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산업보건의와 보건 관리자는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인 보좌와 지도를 담당하는 임무를 지니는 것이다.

Q7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를 선임코자 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A. 사용자는 산업보건이나 보건 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사용주는 산업보건의와 보건 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 양식에 따라 지방 사무소를 경유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익보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다.